

제 255 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1.3.8.)

조례안 및 일반의안 검 토 보 고 서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해 용]

목 차

1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9
3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14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2021. 2. 22.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21. 2. 24.

2. 개정이유

- 코로나19 장기화로 각종 공연과 전시 등의 중단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그들의 예술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재난극복과 지역예술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역예술인을 정의함(안 제2조제3호)

1)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으로서

2)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그 예술 활동이 증명되는 사람

나. 지역예술인에게 재난극복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 신설

(안 제6조제4항)

다. 불필요한 규정 삭제(안 제8조·제9조)

- 1) 준용 :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조에 따라 해당 조례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
- 2) 시행규칙 :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라 당연히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으므로 법령 재기재로 삭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1) 「지방재정법」 제17조
- 2)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 3) 「예술인복지법」 제2조

나. 예산조치 : 2021년 예산 120백만원 확보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2. 3. ~ 2. 15.

※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기간단축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예술 분야 공연과 전시 등의 활동 중단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를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재난극복 경비마련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창작활동 증진을 도모하고
- 나. 관계 법령에 맞게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하는 등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지역예술인에게 재난극복에 필요한 비용지원

나. 관련 조문

1) 안 제6조제4항

2)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 한시적
경비로 1억 이상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결과

연도	2021년도
지원액	
군비	120백만원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2021년도)

가. 지원대상 : 거창군 거주 예술활동증명 소지 지역예술인

나. 사업비 : 120명 x 1백만원 = 120백만원

작성자: 문화관광과장 정 상 준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하. (생략)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거.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나.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예술인복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예술 활동의 증명) ①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 및 세부 기준 등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사람
2.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3. ~ 5. 생략
6.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

② 예술 활동 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예술 활동 증명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 8. 6.>

2.~12.(생략)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18-0025

~생략~

「지방자치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법령·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당연히 규정할 수 있지만,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경우 자치사무·단체 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 여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상위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3조(입법예고 대상) ① 군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군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군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2. 그 밖에 입법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입법예고 기간)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한다.

□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2021. 2. 22.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21. 2. 24.

2. 폐지이유

-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자들에게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시적 재정지원을 위해 이 조례를 제정(2013. 9. 25.)·시행하였으나,
-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가 완료(2016. 8.)되고,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2016. 3. 30)으로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피해자로 결정된 한센인 모두에게 위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제도가 완화되는 등 그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충분한 보상과 지원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2021년부터 재정지원을 중단하기로 정책결정됨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를 폐지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22조

2)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1. 19. ~ 2. 8.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가.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에 따른 한센인 정착촌 “성산마을” 집단이주가 완료되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위로지원금 지원대상이 완화되는 등 한센인의 기본생활 유지에 필요한 지원이 안정화되어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3. 30] [법률 제13666호, 2015. 12. 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해방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한센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행해진 감금·폭행·강제노역 등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피해자의 인권신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현재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한센인 피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만 생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어 전체 피해자의 약 15퍼센트에 해당하는 600여명이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한 이 법의 입법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생활지원금"을 "위로지원금"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피해자로 결정된 한센인 모두에게 위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 법의 입법목적을 구현하려는 것임.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센인”이란 한센병에 걸린 자 또는 한센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종결된 자를 말한다.
2. “한센인입소자”란 한센인으로서 국립소록도병원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이하 “수용시설”이라 한다)에 격리 수용된 자를 말한다.
3. “한센인피해사건”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가. 한센인입소자가 1945년 8월 16일부터 1963년 2월 8일까지 수용시설에 격리 수용되어 폭행, 부당한 감금 또는 본인의 동의 없이 단종수술을 당한 사건
나. 1945년 8월 20일을 전후하여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에서 소록도 갱생원 직원에 의한 폭력으로 한센인이 사망, 행방불명 또는 부상을 당한 사건
다. 1962년 7월 10일부터 1964년 7월 25일까지 전남 고흥군 도양면 봉암 반도와 풍양반도를 잇는 간척공사와 관련하여 한센인이 강제노역을 당한 사건
라. 그 밖에 제3조에 따른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결정한 사건

4. “피해자”란 위원회가 제2조제3호의 각 목에서 정한 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자 중에서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결정한 자를 말한다.
5. “유족”이란 피해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피해자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피해자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3. 의료지원금 및 위로지원금(이하 “의료지원금등”이라 한다)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4.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진상규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 및 한센인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1. 15.>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료지원금등) ① 국가는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한센인에 대하여 위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29.>

② 의료지원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③ 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와 의료지원금등의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위로지원금) ① 삭제 <2016. 3. 29.>

②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위로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 현행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조례」

(제정) 2013.09.25 조례 제2164호

(일부개정) 2015.04.29 조례 제224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센인 정착촌 거주자들이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어 집단이주를 하게 되는 경우에 재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과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센인 정착촌”이란 거창군 거창읍 성산길 192부터 290까지 일원에 있는 성산마을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한센인 정착촌의 실제 거주자가 군수가 지정하는 지역으로 10세대 이상이 이주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제4조(지원 계획수립 및 대상사업) ① 군수는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한센인 정착촌의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하며, 거창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1. 한센인의 기본적 생활유지를 위한 통상적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사업
2. 한센인의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는 권익강화 및 환경개선사업
3. 한센인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활비 및 의료비. 다만,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외하고, 지원 범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준을 초과하지 못한다.(호신설 2015.4.29.)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호이동 2015.4.29.)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 2. 22.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1. 2.24.

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① 거창 거열산성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1. 제안이유

- 국가사적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으로 역사문화교육 및 관광자원 활용

2. 주요내용

가. 취득 개요

- 기 간 : 2021. 2. ~ 12.
-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산45-1번지 일원
- 취득면적 : 60,614㎡(8필지)
- 소요예산 : 433백만원(국 303.1, 도 64.95 군64.95)
- 내 용 : 토지·지장물 매입, 사적종합정비계획수립용역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구분	재산 종별	재 산 소 재 지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 사유	비고 (소유자)
		소재지	지목	면적				
계		사유지		60,614	28,815			
취득	토지	거창읍 상림리 산45-1	임	24,397	12,442	2021년	거열산성 토지 매입	신*철
		거창읍 가지리 산156-1	임	6,645	3,322			오*기
		거창읍 가지리 산157	임	1,785	910			신*수
		거창읍 가지리 산160-1	임	694	353			김*준
		거창읍 가지리 산160-2	임	15,967	7,983			김*자
		거창읍 가지리 산160-3	임	1,190	606			정*수
		거창읍 가지리 산164	임	614	300			양*언
		마리면 영승리 산87-3	임	9,322	2,899			김*우

※ 토지 기준가격 = 공시지가 × 면적

다. 추진경과

- 2020. 9. 24. : 거창 거열산성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지정
- 2020. 11. 12. : 2021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 신청
- 2021. 1. 4. : 2021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확정

라. 향후계획

- 2021. 2. : 공유재산 심의
- 2021. 3. :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 2021. 3. : 감정평가
- 2021. 3.~ 7. : 보상계획 공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 2021. 7.~12.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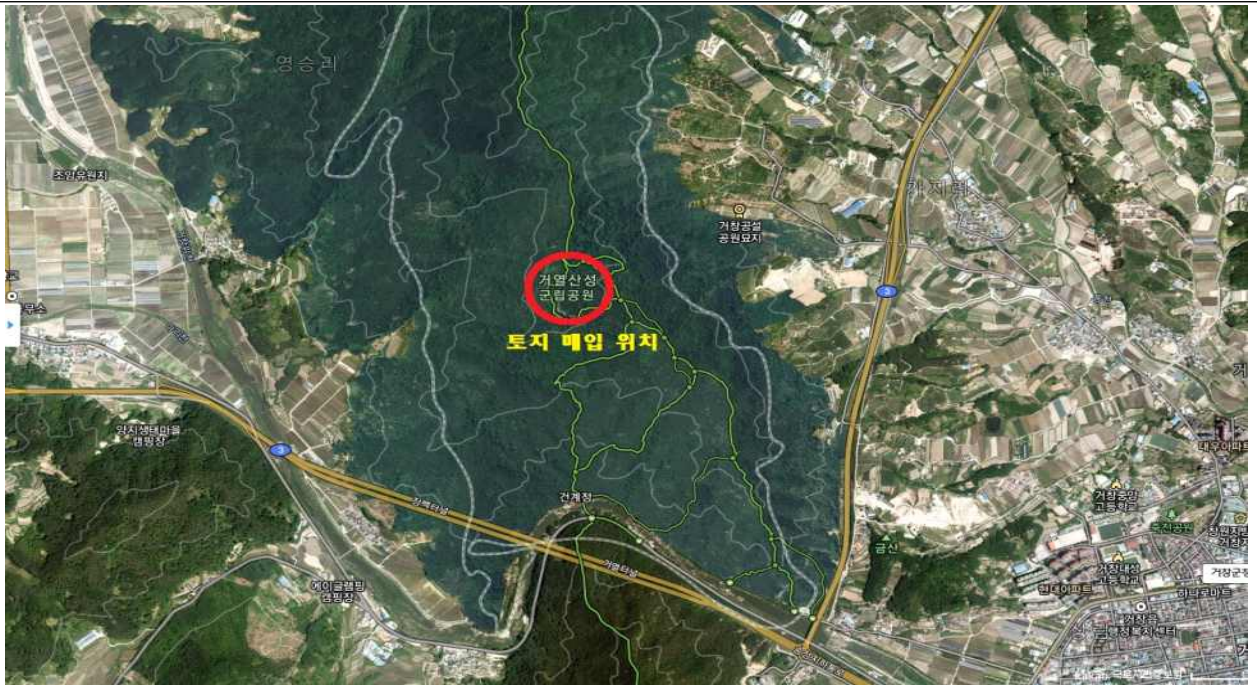
마. 기대효과

- 사적의 안전한 보호 및 문화재 보존 · 관리의 효율성 제고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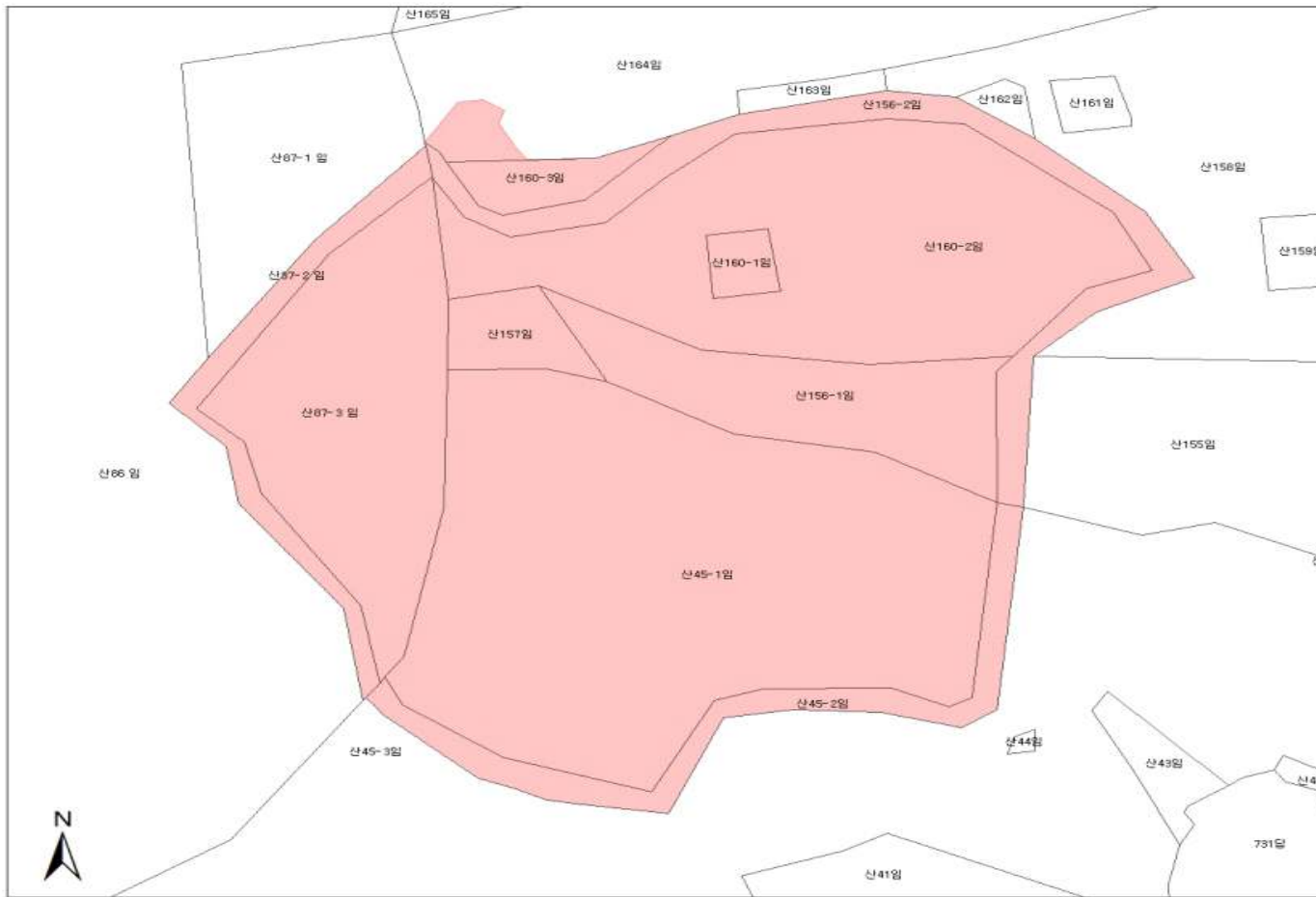
사진설명

위치도



사진설명

거열산성 전경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사진설명

지형도면

5. 검토의견

가. 거창 거열산성은 1974년 도기념물 제22호로 지정되었고, 1983년 군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체계적인 복원정비와 보존관리를 통해 2020년 9월 24일 국가문화재 사적 제559호로 지정되었음

나. 국가사적문화재로 삼국항쟁기 고대성곽으로서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관광자원으로 발굴·활용하기 위해 부지 취득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②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

1. 제안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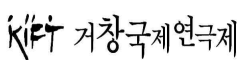
-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소송 관련 거창군과 집행위 간 최종 합의에 따른 상표권 매입

2. 주요내용

가. 취득 개요

- 기 간 : 2021. 1. ~ 12.
- 양 도 인 :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
- 양 수 인 : 거창군
- 취득내용 :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등 4종
- 소요예산 : 1,000백만원(균1,000)
- 내 용 : 거창국제연극제 등록 상표권 이전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구 분	등록번호	상표 이미지	상표내용
2018.12.24. 계약상표권	41-0199273		KIFT 거창국제연극제
한글상표권	40-1527181		거창국제연극제
영문상표권	40-1499911	Keochang International Festival of Theatre	Keochang International Festival of Theatre
거창국제 OFF 연극제	41-0336964		거창국제OFF연극제 OFF KEOCHANG INTERNATIONAL FESTIVAL OF THEATRE

다. 추진경과

- 2018. 12. 24. : 상표권 이전 계약 체결
- 2019. 05. 27. : 집행위, 약정금 청구 소송
- 2020. 11. 13. : 약정금 청구 소송 1심 판결
(17.35억원 지급 등)
- 2020. 12. 04. : 상표권 매입 합의서 체결(합의금액 10억원),
소송취하
- 2021. 02. 02. : 상표권 이전 완료(집행위 → 거창군)

라. 향후계획

- 2021. 3. : 거창국제연극제 정상화 추진협의회 개최
- 2021. 3. ~ : 2021년 거창국제연극제 개최 준비
(문화재단 인력 확보, 행사 계획 수립 등)
- 2021. 4. : 연극제 개최 관련 추경 예산 확보(인건비, 행사비)
- 2021. 7. : 거창국제연극제 정상 개최

마. 기대효과

- 거창국제연극제의 정상 개최를 통한 제2의 도약
- 군민들의 문화욕구 충족 및 지역경제 활성화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4. 검토의견

가.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은 2018년 거창군과 (사)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의 거창국제연극제 관련 상표권 4종에 대한 이전 계약 체결과 약정금 청구소송, 상표권 매입 합의서 체결로 추진되었음.

나. 상표권 매입은 거창국제연극제의 정상화와 군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함

다. 상표권 매입 대금은 2021년 2월 2일자로 (사)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에 지급되었고, 상표권 이전이 완료되는 등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2.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 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 ⑥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제7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1.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3. 법 제43조의3에 따른 위탁재산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2015.12.10.)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군수가 자문하기 위하여 거창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행정재산·일반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행정재산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3.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4.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른 기부채납된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갱신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처분
4. 행정재산으로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에 대한 용도의 변경·폐지
5. 법령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 및 무상대부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세운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